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560호 2015. 4. 15.(수)

【조 례】

제978호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979호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제980호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
제981호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982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983호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24
제984호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985호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71

【규 칙】

【훈 령】

【예 규】

【고 시】

제2015-51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시행인가 고시	72
-----------	----------------------	----

【공 고】

제2015-47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74
제2015-476호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77
제2015-477호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입법예고	81
제2015-479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87
제2015-525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8
제2015-52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5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3. 30)
에서 의결된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5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78호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명칭은 “공주시정” 으로” 를 “명칭은 “흥미진진 공주” 로” 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시장” 을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시의회” 를 “공주시의회”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유료광고는 「공주시 공공인쇄물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를 “유료광고는 「공주시 공공인쇄물광고 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지” 를 “소식지” 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범위안” 을 “범위” 로 하고, “제11조” 를 “제11조제2항”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 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시정지” 를 “소식지” 로 한다.

②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시정지” 를 “소식지” 로 한다.

공주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3. 30)에
서 의결된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5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79호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공주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2. "공주시청장" (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시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주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 시청장 대상은 시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주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과 5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청장 대상 심의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후생팀장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시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7조(장제비용 지원) ① 시청장 및 가족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市)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 유가족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례비용 제외대상) 제7조의 장제비용 중 지원대상은 국가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제비 기준(제7조 관련)

사 항 별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영결식장 설치	면적 6m×3m=18m ² , 높이 4m	식	1	5.5평 원칙
장례식장 대실료	-	실	1	3일장 원칙
영구차	대형	대	1	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	중급	식	1	3일장 원칙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상주복장 및 넥타이 마. 영구차 리본	일반 흑색 백색 흑색 대형	개 개 족 개 개	500 300 100 20 1	조문객용 유족, 종사원, 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	대형	개	1	시장명의
안내문 인쇄	모조32절 180g/m ²	부	500	
납골함(통)	-	개	1	일반용
기타비용	-	-	-	시청장 장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

공주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3. 30)에
서 의결된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5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80호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공주시민의 시
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
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 2."컨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3."공주시 서포터즈"란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공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홍보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시장은 SN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시민의견 및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자가 SNS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SNS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6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

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3.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연습성,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제7조(행사의 개최) ① 시장은 SNS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경품(유가증권 포함)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공주시 서포터즈의 운영 등)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콘텐츠 자료 수집과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주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서포터즈의 역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취재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정 시책, 주요 사업, 주요 행사·축제
2.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
3. 그 밖에 SNS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소식 등

제11조(서포터즈의 위촉해제)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원고료 지급 등) 시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원 등)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3. 30)에
서 의결된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5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81호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을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
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5인 이상 25인 이하” 를 “15명 이상 25명 이내” 로,

같은조 제2항 중 “해당하는 자” 를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하고, “시장·부시장·시민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을 “시장·시민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 으로, “2인” 을 “2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5인 이상 25인 이하” 을 “15명 이상 25명 이내” 으로, “사회과장·복지과장·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건강과장” 을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보건과장·건강과장”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을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으로,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 을 “(위원의 위촉해제)” 로 하고, 같은 조 중 “해촉할” 을 “위촉해제 할” 로 한다.

제7조의 제1항 본문 중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를” 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업무 팀장을”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각 협의체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의2제2항 중 “5인 이상 15인 이하를 “5명 이상 15명 이내” 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을 “범위에서 수당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읍·면·동별로 2명 이상 4명 이내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지역여건상” 을 “지역여건에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건의하거나 <u>시장의 자문에 응한다.</u></p> <p>1. ~ 8. (생략)</p> <p>9. 「<u>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p> <p>10. · 11.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u>15인 이상 25인 이하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u>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u>시장 · 부시장 · 시민국장</u></p>	<p>제2조(기능) ① ----- ----- ----- -----<u>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u>-.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 제6조제4항에 따른 <u>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u></p> <p>10. · 11.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및 운영) ① ----- ----- -----<u>15명 이상 25명 이내</u>----- -----.</p> <p>② ----- ----- -----<u>해당하는사람</u> ----- -----<u>시장 · 시민국장 · 보건소장 ·</u></p>

· 보건소장 · 실무협의체위원장
및 공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위원이 된
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의위
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경우에는 시장을 임명직 위원에
서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사회과장 · 복
지과장 · 보건소의 보건과장 및
건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
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무자중
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

실무협의체위원장 및 공주시 의
회에서-----
-----2명-----.

③-----

1명-----
-----.

④ -----
-----15명 이상 25명 이내 -
-----사회과장 ·
복지지원과장 · 보건과장 · 건강
과장-----.

⑤-----,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1조의5제2항 -----

-----1명-----

이하의 대표협의체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생략)

<신설>

제15조(복지위원의 정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의 정수는 인구비례에 의한 읍·면·동당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 다만, 읍·면·동의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복지위원 정수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내-----

-----.

제13조(경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복지위원의 정수) -----

-- 2명 이상 4명 이내로 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

-----.

공주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3. 30)에
서 의결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5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82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
다.

9. 순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순직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0. 공상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8호 본문 중 “전몰군경 유족 또는 가족” 을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으로 하고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을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전몰군경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50천원) 지원. 다만,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군경을 말하며, 유족 또는 가족이란 같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7조(복지지원 등)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공주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3. 30)에
서 의결된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5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83호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해서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
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공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또는 관제실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서 목적별로 설치된 CCTV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신·수신 하는 것을 말한

다.

6.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이하 "CCTV운영자"라 한다)란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영상정보취급자"란 CCTV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공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CCTV와 새로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CCTV의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CCTV의 통합 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CCTV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위해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부서로 한다.

제6조(책임자의 지정) ① CCTV 총괄책임자는 부시장(개인정보보호책임자)으로 한다.

② CCTV 운영자는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CCTV 운영자 및 영상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CCTV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등

제7조(CCTV의 설치기준)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법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5. CCTV 구조물의 형태 및 색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공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8조(설치·운영계획 수립)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자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7. CCTV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8.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9.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10.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보안대책 및 보안성검토) ①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0조, 112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개인정보 및 CCTV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외부출입인원 등에 대한 인적 보안대책
3.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방안 등 물리적 보안대책
4. CCTV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
5. 재난복구계획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및 보유기간, 삭제방법에 대한 관리대책

②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지침 제110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정보보안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기술제안요청서(RFP)
3. 자체보안대책
4.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CCTV 운영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1조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일반보안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보안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보안심사의뢰서
2. 보안성검토 결과
3. 사업계획서
4. 기술제안요청서(RFP)
5. 자체보안대책
6. 정보통신망 구성도

제10조(CCTV의 설치목적)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CCTV를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CCTV의 신규 설치 및 CCTV의 통합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 추가되는 경우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CCTV 전담부서 이외의 기관 및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CCTV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안내판의 설치) ① 시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이름 및 연락처

② 시장은 CCTV의 통합관리, 부서명·관리책임자·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안내판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1항의 안내판을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흐름조사, 원거리 촬영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시 홈페이지, 공주시 시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

설치로 보안 취약점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내판의 내용을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CCTV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CCTV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영상정보자원의 관리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CCTV 유지보수) 시장은 CCTV의 장애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해서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 해야 한다.

제17조(CCTV의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 ① CCTV운영자는 주기적으로 CCTV의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52조에 따른 CCTV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CCTV 운영자는 제1항의 CCTV의 점검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스템 등록은 전담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CCTV의 운영·관리 방침) ① CCTV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CCTV 운영자는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CCTV 운영자 청사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

④ 제1항과 제2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시 홈페이지 게시를 전담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

제19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서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CCTV의 연계)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 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CCTV 운영자는 CCTV를 교체하거나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관제의 범위)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CCTV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CCTV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다.

제22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CCTV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수임)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CCTV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CCTV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경찰서,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CCTV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26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출입인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종료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공주시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CCTV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당연직 위원은 공주경찰서 관련 업무부서장, 공주교육지원청 관련 업무부서장, 공주시 CCTV 전담부서장, 교통단속용 CCTV 담당 부서장으

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CCTV전담 부서 통합관제센터의 팀장으로 한다.

⑧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뚜렷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⑨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⑩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제30조(수집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의 장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3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시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의무) ① 시장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관제요원을 대상으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

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시장은 CCTV를 통해서 수집된 영상 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무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능 지역(제10조 관련)

업무 목적	설치가능 지역
방법 (어린이·아동보호 포함)	범죄발생 우범지역, 상습 범죄 우려 지역 등 어린이 보호구역(학교주변, 통학로 등)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
쓰레기투기방지	쓰레기무단투기 상습 지역
주차관리	불법 주차가 심한 골목 등
교통정보수집	교통량 변화가 많은 구간 도로선형 불량으로 사고 다발 지점
불법주정차단속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
재난·재해관리 (태풍, 산불 등)	태풍, 홍수, 호우 등에 의한 하천 범람 지역 호우 등에 의한 도로침수 우려지역 산불발생 다발 지역
시설물관리 (문화재 포함)	청사, 주요 문화재 등의 시설물 내·외부

[별표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별 의견수렴 방법(제11조 관련)

설치장소	의견 수렴 방법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및 장소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 (노조 등)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및 장소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정보보호 담당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이외 기타 일반 공공장소 (예: 도로 등)	행정예고, 공청회, CCTV 설치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 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 사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홈페이지 이용가 능)

[별표 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방법 (제13조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안내판 설치방법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 설치할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개인영상정보침해 위험이 적고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원거리촬영, 과속·신호 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 조사 -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산불감시)	인터넷 웹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인터넷홈페이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 영업소, 점포, 관보, 광역시도 신문 등에 게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안내판 미설치

[별표 4]

시스템별 주요점검 내용 (제17조 관련)

구분	점 검 내 용
현장제어 시스템	카메라 및 하우징 상태, 비디오 서버 영상전송 상태
	네트워크 유니트 박스 상태, 청소상태(카메라 시스템 등)
운영단말 시스템	운영단말 시스템 및 메모리 사용현황, 운영단말 시스템 통신상태
	운영단말 시스템 데이터 이상 유무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동작상태, 데이터 수집기능
	시스템 로그파일 점검, 현장설비와의 통신상태
	영상기기와의 통신상태, 영상기기제어 상태
운영단말 시스템	정지 영상캡처 상태, 음성 전송상태
	CPU, HDD, 모니터 상태
	통신 및 주변장치 동작상태, 녹화 및 재생상태
	시스템 연동상태

[별표 5]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확인요령(제32조 관련)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증명서

대리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확인
 - 필요한 경우 질문 등을 통해 확인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수칙 (제25조 관련)

보안 관리

- 영상정보보호 등 보안유지를 위해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 관리
- 외부인 출입에 대한「출입제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 방문자, 방문 일시, 방문 목적,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
- 외부인 출입 시 카메라(휴대폰 등) 촬영을 통제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영상정보를 관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 금지
- 센터 내 모든 상황 근무자 및 유지보수 등의 장애조치를 위해 방문하는 상시 출입자는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상황 처리

- 모니터링 중 사건.사고 등의 상황 발견 시
 - 상황보고(모니터링 요원) → 상황파악 및 유지(경찰/모니터링요원) → 상황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
- 비상벨 작동 감지 시
 - 상황파악(경찰/모니터링 요원) 및 전파(유.무선 등) → 기록 유지 → 처리결과 보고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 모든 근무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상시 점검 및 유지

※ 위 내용은 해당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CCTV 설치 절차안내 (제7조, 8조, 10조, 11조 관련)

CCTV 설치 절차 안내

1. 관련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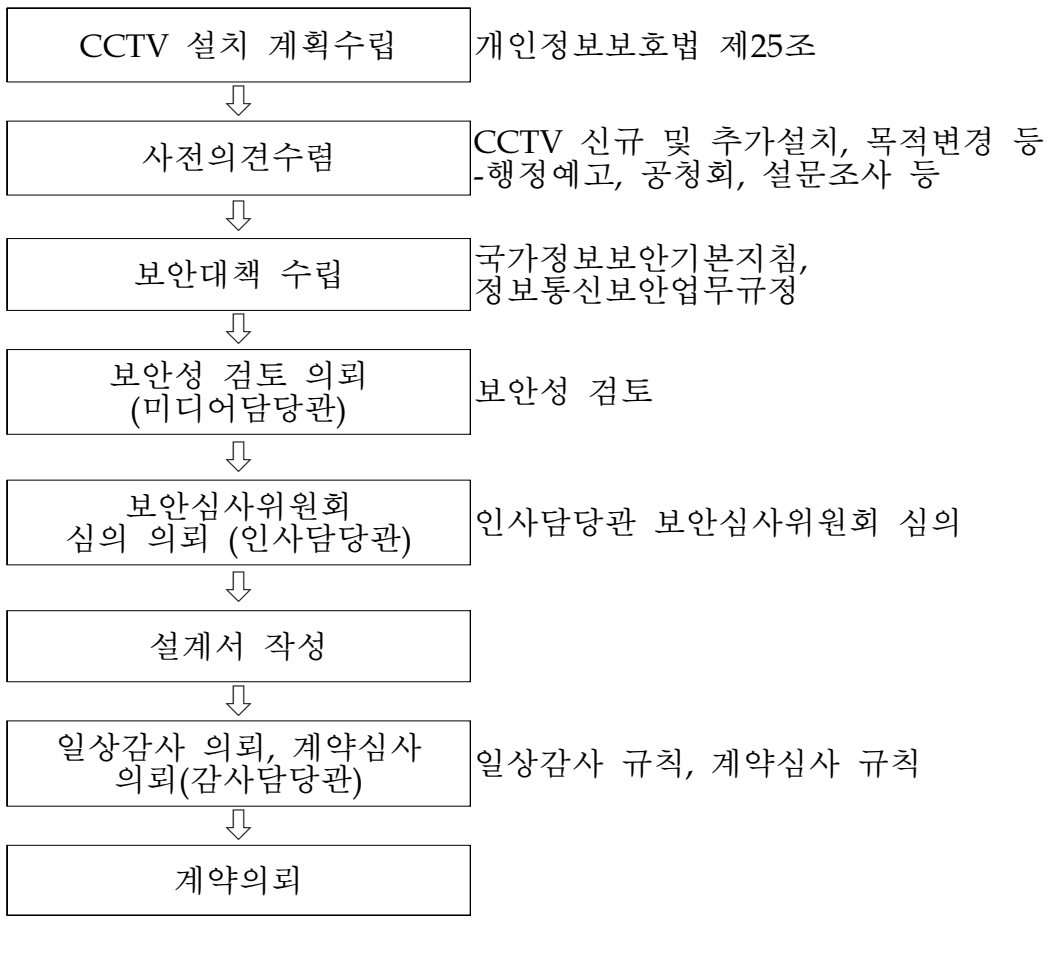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2011.9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1)

공주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2. CCTV 설치 절차



3. 보안대책

가. 관리적보안대책

- 관리책임자 지정운용

부서명	보안책임자	직 위	성 명	연락처(☎)
	정			
	부			
	취급자			

- 외부에 CCTV 설치 시 카메라, 중계서버는 비인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위치하거나 시건장치를 설치
- 전송회선의 절단, 도청,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 및 보호도관 설치
- CCTV 관제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통제장치 도입
-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장비 등의 정상작동여부 및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 관계법령에 근거,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장 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된 보호구역에 보관

나. 인적 보안관리

-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직무 및 책임범위 명시
- 유지보수용역업체의 시스템 접근 시 시스템운영자 확인 및 기록유지 등
- 시공/구축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구축 완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다. 기술적 보안대책

- 카메라, 서버, 소동망은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과 분리, 별도 단독망 구성
- 관리용 PC/저장장치는 계정·비밀번호를 통해 접근통제
- 관리용 PC/저장장치는 바이러스백신설치·비인가USB사용금지 등 보안조치 수행
- 유지보수 용역업체의 시스템 접근 시 관리자 확인 및 기록 관리
- 통신망 보안대책 강구
- 장비별 패스워드의 주기적 변경(분기)으로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외 노출금지

라. 재난복구계획

- 시스템 : 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하여 복구
- 통신망 : 통신사업자/유지보수업체 협조 하에 긴급복구, 정보통신시스템 예비 통신장비를 확보하여 복구체계 유지

※ 위 내용은 해당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 체 적 으 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청구 목적 및 사유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margin-top: 10px;"> 청구인 (서명 또는 인)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공 주 시 장 귀 하 </div>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제32조 관련)

위 임 장

청 구 인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p>「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요구를 위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임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공 주 시 장 귀 하</p>		

[별지 제3호 서식] (제31조 관련)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 제4호 서식] (제31조, 32조, 35조 관련)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에 정일자	파기 결과 처리일 자	등 및 일 자	안전관 리 요청 결과 및
1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2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3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4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5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6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7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등)
-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제31조, 32조 관련)

(앞 쪽)

개인영상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통지서

받는 사람 (우편번호: _____, 주소: _____)

구 분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열람 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계(①+②)
	원	원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p>「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공 주 시 장 직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유의사항

1. 개인정보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를 대리하는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정보주체에게 공개할 때 : 정보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정보주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공개할 때 : 대리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 해당 개인정보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제32조 관련)

개인영상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받는 사람 (우편번호: , 주소:)

구 분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 내용	
조치 내용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장 <input type="checkbox"/> 직인	
유의사항	
개인영상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 서식] (제17조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점검 일지

담당자	담당	과장	결재

점검일시 : 년 월 일 관리번호 :
 설치위치 : 관리책임자 :
 저장(관제)장소 : 영상정보취급자 :
 설치대수 : 카메라()대, 모니터()대, 저장장치(대), 기타(대)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비고
카메라/ 팬틸트	작동 여부		
모니터장치	작동 여부		
	화질 여부		
저장장치 / 접근통제	녹화 및 재생 상태		
	저장장치 로그인 암호 설정여부		
	로그 기록관리 여부		
	시건 장치 상태		
	출입자 기록관리 여부		
기타	청결 상태		
	안내판 설치		
	○○○		
	○○○		

특이사항 :

조치사항 :

[별지 제9호 서식] (제18조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본 _____(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00대	건물로비, 주차장 입구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홍길동		0000과	00-0000-0000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보관시설 명)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

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만)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OO시스템	홍길동	02) 000-0000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OO부서 OO팀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0월 0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2년 0월 00일 / 시행일자 : 2012년 0월 00일

[별지 제10호 서식] (제6조 3항, 13조 관련)

○○○ CCTV 설치사업 관리카드

사업명, 계약명	○○설치사업, ○○설치
사업부서, 업무담당자	○○과, ○○○
사업기간	201○년○월○일 ~ 201○년○월○일
준공일	201○년○월○일
사업예산	금○○원(국비 ○○원, 도비 ○○원, 시비○○원)
계약금액	금○○원(관급 ○○원, 도급 ○○원)
계약방법	수의, 일반경쟁 등(물품, 공사 등)
낙찰자(설치업체)	○○○○(주), 대표자 ○○○ 주소, 연락처
설치목적, 용도	다목적용, 방범용, 시설물관리 등 (설치목적 전체 열거)
설치대수	○○개소 ○○대
설치위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 ○○번지(○○로 ○○번) (위도 , 경도) 2. ○○면 ○○리 ○○번지(○○로 ○○번) (위도 , 경도) 3.

CCTV 관리카드<작성 예시>

순서	1(사업당 설치대수가 여러대인 경우)				
위 치(주소)	춘수정어린이놀이터(금성동 192-4)				
도 입 장 비	항목	비디오서버	주카메라	보조카메라	DVR
	모델명	○○	○○	○○	○○
	제조사	○○	○○	○○	○○
	화소		○○만화소	○○만화소	
	수량	○대	○대	○대	○○
주카메라	화소수	형태별(동/스탠다드)		적외선촬영	투광기
	○○만	동		○	X
	줌	회전	음성녹음	비상벨	특수기능
	○	○	X	○	X
관리방식	자체관리	위탁관리	업체 및 기관명	운영관리방침	관리대장
	○			○	○
영상저장	녹화유무	촬영시간		녹화장소	영상저장일수
	○	24시간		공주경찰서 상황실	30일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기타
	○○○과장	공주경찰서 ○○○	○○면○○○		
안내판	안내판설치			홈페이지게재(설치할 수 없는 경우)	
	○				
관제 운영현황	실시간 관제여부	○		관제장소	공주경찰서 상황실
설치 형태	플대	전주	기타		
	○				
통신망 형태	전용회선	ADSL	자가망	기타	
	○				
현장 사진 및 배치도					
정비내역	일시	내용			비고
	○.○.○.	○○○ 교체, ○○ 수리			

<작성요령>

1. “○○○ CCTV 설치사업” 개요 기입

- 사업명, 계약명, 사업부서, 업무담당자, 사업기간, 준공일 사업비(예산금액, 계약금액), 계약방법(수의, 일반경쟁 등, 물품, 공사 등), 계약자(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설치목적, 용도, 설치대수(○○개소, ○○대 기입), 설치위치(설치지역 지번, 도로명 주소 기입, 대표이름도 같이 기입)

1-1. 설치목적 : 2가지 이상인 경우 다목적으로 표시

사회안전 (방법용)		환경 개선	시설물관리		교통안전		특수용		기 타
방법용	어린이보호용		쓰레 기 투기 방지	시설 물 관리	주차 관리	교통 정보 수집	주정 차 단속	재난 화재 감시 용	
생 활 방 범	도 로 방 범	어린이보호구 역, 도시공원, 놀이터							

2. 순서

- 하나의 사업으로 CCTV 여러 대를 설치할 경우

3. 위치

-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모두 기입, 주변의 대표적인 건물 등 이름도 기입

4. 카메라

- 주카메라, 보조카메라 화소 및 수량 모두 기입

- 비디오 서버, DVR 이 있는 경우 기입

- 투광기 : 적외선 촬영 기능이 없는 카메라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한 적외선 투광 장치 (LED조명)

- 특수기능 : 번호인식, 안면인식, 객체추적 등의 특수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 기입

5. 관리방식

- 자체관리, 위탁관리업체 유지보수 계약 여부 기입

- 관리운영지침, 관리대장 소지 여부 기입

- 설치 후 보증기간이면 기타에 “보증기간” 기입

6. 영상저장 : 녹화장소는 저장장치가 있는 장소 기입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 보관 및 열람, 이용, 제공 하는 책임자

(예: 공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 공주시청 교통과장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 관리 실무 담당자

(예: 공주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 공주시청 교통과 주무관 ○○○)

7. 관제 운영현황 : 실시간 관제인지 여부 기입, 관제장소 기입

8. 설치 형태 : 폴대, 전주, 기타 기입

9. 통신망 형태 : 일반 인터넷 회선은 ADSL 에 기입(1달 요금 2~3만원 정도), 전용회선은

광케이블 연결(1달 요금 8만~10만 정도), 자가망은 건물 내 등에서 CCTV와

관제장소(저장장치)를 직접 회선을 연결한 경우(KT 등 외부통신사 회선 사용이 없는 경우)

10. 현장설치 사진

- 지적도상 위치도 표시

- 카메라가 보이는 설치사진(설치형태 전주, 폴대 확인 가능하게)

- 11. 정비내역
 - CCTV 정비내역 기입

[별지 제11호 서식] (제9조의2 관련)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제 목	
회 부 근 거	
회 부 기 관	
주 요 내 용	
요 구 자 의 의 견	

첨부서류 :

위와 같이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심의요구자 직위

성명

①

공주시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공주시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관련한 업무(관제, 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및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및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고발 및 징계 권고)
- 라.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 마.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예시, 공주시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관련한 업무(관제, 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공 주 시 장 귀하

위 촉 장

소속 :

성명 :

귀하를 20○○. ○. ○○ ~ 20
○○. ○. ○○ 까지 공주시
CCTV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합니다.

20○○년 ○월 ○○일

공주시장 ○ ○ ○

공주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3. 30)에
서 의결된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5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84호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초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신 설></u></p> <p>1. (생 략)</p> <p>2.·3. (생 략)</p> <p>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p> <p><u><신 설></u></p>	<p>제2조(세입) ----- -----.</p> <p>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u><삭 제></u></p> <p>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p>
<p>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p>	<p>제5조(전출금지) ----- ----- ----. <u>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공주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3. 30)에
서 의결된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
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공 주 시 장 오 시 덕 인

2015년 4월 15일

공주시 조례 제985호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공주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
한 과태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사업명	지구명	위 치		사업량 (km)	총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사업효과
		면	리				
2015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 업	계	2	2	1.7	212,800	‘15.4월~1 2. 30일	기계화영농 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입동	신평	입동	1.1	138,300		
	오인 광명	의당 탄천	오인 광명	0.6	74,500		

2015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인가 내역

〈공주시〉

(금액 : 천원)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사업량		사 업 시행자	총사업비			국고차등 보조율	인 가 연월일	관련 사업
	면	리		포장 폭	연장		계	국고	지방비			
계	2	지구	ha	m	km		212,800	137,920	74,880	균특 70 도비 9 시비 21	2015. 4. 01	
입동	신평	입동		3.0	1.1	공주 시장	138,300	96,810	41,490	-	“	
오인 광명	의당 탄천	오인 광명		2.5~ 3.0	0.6	공주 시장	74,500	41,110	33,390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공주시 교통 120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5. 04. 15.

공 주 시 장

1. 공람 기간 : 2015. 4. 15 ~ 4. 29. (14일간)
2. 공람 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 041-840-8550)
공주시 보건소 보건과 보건행정팀 (☎ 041-840-8752)
웅진동 주민센터 (☎ 041-840-2860)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5. 4. 29. 18:00
 - 제출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4. 공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변경

가.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7	노외 주차장	교통 120번지 일원	3,562	감)3,562	-	'09.9.1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5	공주시 보건소	공공청사	교통 120번지	-	증)7,782.2	7,782.2	-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높이 : 16m 이하

5. 기 타

- 가.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은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본 결정(변경)(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나. 향후 행정절차(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행 중 본 공람·공고내용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고, 공람장소에서 필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하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공람기간까지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관련 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과 보건행정팀(☎041-840-8752) 및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8-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사곡계실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5. 4. 10.

공 주 시 장

1. 공람 기간 : 2015. 04. 10. ~ 04. 23.(14일간)

2. 공람 장소 : 공주시 전략사업과 (☎ 041-840-8616), 사곡면사무소 (☎ 041-840-2825)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5. 04. 23. 18:00

○ 제 출 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4. 공람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1	계실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사곡면 계실리 38-1 일원	1,325,835	-	1,325,835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25,835	-	1,325,835	100.0	
공공시설용지	839,502	감) 3,178	836,324	63.1	
시설용지	783,000	-	783,000	59.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420,000	-	420,000	31.7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	140,000	-	140,000	10.6	
정부통합전산센터	223,000	-	223,000	16.8	
도로용지	56,502	감) 3,178	53,324	4.0	법면 포함
녹지용지	486,333	증) 3,178	489,511	36.9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로 결정조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정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28	집산 도로	1,510	계실리 370-5	계실리 산14-69	일반 도로	-	충청남도고시 제2012-332호 (2012.10.2)	단지내 도로
변경	중로	1	1	15~20	집산 도로	1,107	계실리 370-5	계실리 산14-69	일반 도로	-	-	단지내 도로

○ 녹지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계실리 산8 일원	486,333	증) 3,178	489,511	충청남도고시 제2012-332호 (2012.10.2)	

○ 공공청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계실리 55 일원	420,000	-	420,000	충청남도고시 제2012-332호 (2012.10.2)	
기정	2	공공청사	정부통합 전산센터	계실리 10 일원	223,000	-	223,000	"	

○ 연구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연구시설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	계실리 36-1 일원	140,000	-	140,000	충청남도고시 제2012-332호 (2012.10.2)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	BL1	420,000	계실리 55 일원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기정	-	BL2	140,000	계실리 36-1 일원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
기정	-	BL3	223,000	계실리 10 일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기정	-	BL4	486,333	계실리 산14-69 일원	경관녹지
변경	-	"	489,511	"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용 도	지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15층	
-	BL2 대한지적공사 연구연수원	용 도	지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및 연구소와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4층	
-	BL3 정부통합 전산센터	용 도	지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과 부대시설
			불허	지정용도 이외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 수	5층	

5. 기 타

- 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며 본 결정(변경)(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나. 향후 행정절차(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 중 본 공람·공고내용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필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합니다.
- 다. 관련 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사업과(☎ 041-840-8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15 - 477호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관내 1만여명의 대학생에 대하여 현 거주지인 우리시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관내 카드사용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고, 지원과 별도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대학생이 가맹점 이용시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인구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대학생, 시책, 가맹점, 지원금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책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홍보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관내 업체 가운데 희망업체의 가맹점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 4조)

라. 가맹점에 대한 시의 지원과 가맹점의 할인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시책지원 적용 대상을 규정함(지원대상의 요건, 지원대상 금액 등)
(안 제7조)

바. 지원금 신청 절차와 지원금 한도 그리고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사. 시책추진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5. 4. 15. ~ 2015. 5. 5.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5. 5.까지 공주시장(시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시정담당관실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14-702
- 전화번호 : 041-840-2041 FAX : 041-840-2305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생"이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말한다.
2. "내고장 주소 갖기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애향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말한다.
3. "대학생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가맹점"이란(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중 시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업체를 말한다. 다만,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체는 제외한다.
4. "지원금"이란 가맹점에서 이용한 금액 중의 일부를 신청에 따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시책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대하여 대학생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정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생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고장 주소 갖기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가맹점의 지정 등) ① 제2조제3호의 업체중 가맹점 지정을 신청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내인지 여부
2. 제2조제3호의 단서에 따른 대상업체 여부

③ 시장은 계약을 맺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가맹점 지정서를 보기 좋은 영업공간에 게시하고 홍보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문, 인터넷, 정보매체 등도 포함한다.

제5조(가맹점의 지원) 시장은 가맹점 이용의 활성화와 시책의 정착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홍보 표식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해 주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결제금액의 할인) ① 가맹점은 대학생에게 결제하는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제금액의 할인율은 가맹점 계약서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한다.

② 대학생 본인이 가맹점을 포함한 관내 모든 업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을 지원 한다.

③ 지원금을 신청하는 때에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신청 등) 지원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내 가까운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산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용액으로 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뒤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한도) 시장은 대학생에게 1명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공주시 대학생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1. 신조 및 폐기 사유 : 마모에 따른 공인 교체
2. 신조 및 폐기 공인 인영

소 관 부서명	신조공인명	구분	인 영	규 격 (cm)	적용일 (비 고)
중학동	공주시 정안면장 제증명발급전용	신조		2.1×2.1 (정방형) 훈민정음체 /우레탄	2015. 3. 25. (인증기)
	공주시 정안면장인 민원실전용	폐기		2.1×2.1 (정방형) 전서체 /금속	

공주시 공고 제 2015-525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201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된 규제개혁 추진인력을 일반 정원으로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 원

- 공무원 총 정원 : 998명(변동 없음)
-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안 제25조 별표 6)

구 분	직 종	계	인원	직급	운용시한	비 고
현 행	일반	2	1	4급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장
			1	6급	2015년 6월 30일까지	규제개혁
개 정	일반	1	1	4급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장
증 감	일반	△1	△1	-	한시정원에서 일반정원으로 이관	

나. 기타사항

- 단순 자구 수정(안 제7조제2항제5호) : 경리 → 재무
- 국간 사무 범위 명확화(안 제8조제2항제6호, 제9조제2항제12호, 제18조제1호다목)
 - 안 제8조제2항제6호 :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 역세권개발(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제2항제12호(신설) :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 2015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결과 반영(안 제18조제1호다목) : 공주시립 합창단 운영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화: 041-840-2070 / FAX: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경리” 를 “재무” 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역세권개발” 을 “역세권개발(도시계획분야)” 로 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제18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공주시립합창단 운영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 중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로” 를 “공연업무담당 팀장으로” 로 한다.

②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 중 “노인복지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을 “공주시 노인종합
복지관 업무담당 부서의 업무팀장” 으로 한다.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8% 이내	32% 이내	24% 이내	8% 이상	0%

다만, 보건진료직렬 6급 14명 중 13명은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0%	30% 이내	70% 이내	0% 이내	0%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제25조제2항 관련)

관 리 기 관 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운용시한	비 고
		직종	직급			
본청	성장전략사업단	일반직	4급	1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시민국에 두는 과) ① (생 략)</p> <p>② 시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 4. (생 략)</p> <p>5. <u>경리</u>, 계약, 재산,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p> <p>6. ~ 10. (생 략)</p>	<p>제7조(시민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재무</u>----- -----</p> <p>6. ~ 10. (현행과 같음)</p>
<p>제8조(안전산업국에 두는 과) ① (생 략)</p> <p>② 안전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 5. (생 략)</p> <p>6.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 도시계획, 도시개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u>역세권개발</u>에 관한 사항</p> <p>7. ~ 11. (생 략)</p>	<p>제8조(안전산업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u>역세권개발(도시계획 분야)</u>-----</p> <p>7. ~ 11. (현행과 같음)</p>
<p>제9조(성장전략사업단에 두는 과) ① (생 략)</p> <p>② 성장전략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1. ~ 11. (생 략)</p> <p><신 설></p>	<p>제9조(성장전략사업단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u></p>

<p>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및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p> <p>1. 문화시설사업소</p> <p>가. ~ 나. (생략)</p> <p>다. <u>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및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u></p> <p>라. ~ 사. (생략)</p> <p>2. ~ 3. (생략)</p>	<p>제18조(소관사무) ----- ----- -----.</p> <p>1.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공주시 충남교향악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공주시립합창단 운영</u></p> <p>라. ~ 사. (현행과 같음)</p> <p>2. ~ 3. (현행과 같음)</p>
--	---

공주시 공고 제 2015-526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공 주 시 장 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정부의 주요 정책(규제개혁, 복지전달체계 구축) 추진인력 및 2015년 10월 개장을 앞둔 주미산 자연휴양림 운영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 2015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사무 관리가 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9조제1항 별표 3) :
998명(총 정원 변동없음)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조정(안 제49조제1항) : **현행과 같음**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관리운영·전담직위포함)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계	6급상당	7급상당	소계	연구사	연구관	소계	지도사	지도관
현행	998	1	960	1	5	52	902	2	1	1	5	5	0	30	27	3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구 분	일반직(관리운영·전담직위포함)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960	1	5	52	249	281	227	145
개정	960	1	5	52	248	282	226	146
증감	-	-	-	-	△1	1	△1	1

※ 그 밖의 직렬·직급(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은 변동사항 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부서별 정원 조정 내역

기관별	부서	기존	변경	증감인원	비고
본청 (증4/감4)	복지지원과	22	23	1	행정9 +1 [사회복지 인력 확충 (복지기능 행정직)]
	회계과	24	23	△1	위생7 -1 (자연감소분 정원 감원)
	문화재과	21	20	△1	위생 9 -1 (산림과 인력 충원)
	교육체육과	15	14	△1	행정·시설8 -1 (자전거 정책 교통과 이관)
	산림과	17	19	2	행정·녹지·시설8 +1, 위생 9 +1 (주미산 자연휴양림 등 추진인력)
	교통과	21	22	1	행정·시설8 +1 (자전거 정책 교육체육과 인수)
	토지과	21	20	△1	행정·시설8 -1 (산림과 인력 충원)
사업소 (감1)	문화시설사업소	24	23	△1	운전8 -1 (운전직렬 감원) 위생9 -1, 행정9 +1 (직렬조정)
읍면동 (증1)	응진동	11	12	1	사회복지9 +1 (사회복지 인력 확충)

※ 규제개혁 추진인력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한시정원으로 기 책정된 정원으로 조정 내역에 별도 표기하지 않음(책정직렬·직급 : 행정·시설 6)

- 정원관리 기관별 · 부서별 직급 조정 내역

기 관 별	부 서	기존	변경	증감 인원	비 고
보건소	보 건 과	70	70	-	보건진료 6 -1, 보건진료 7 +1
사업소	시립도서관	15	15	-	위생 9 -1, 위생 7 +1

나. 사무조정 내역 : 붙임 개정안과 같음.

다. 그 밖의 사항

○ 업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직급 및 직렬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14-702 / 전화: 041-840-2070 / FAX: 041-840-2307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 및 지방 균형발전 사업 총괄

제8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온라인(고맛나루)장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7. 온라인(고맛나루)장터 판매, 홍보, 유통, 고객관리, 정산, 회계 관리, 시스템 운영관련 입점업체 교육

제8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라인 공주 시민제도 확충, 가맹업소관리, 여행코스 관리, 여름캠프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10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를 제23호로 한다.

제8조제2항제26호를 제24호로 한다.

제16조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한다.

제18조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를 제20호로 한다.

제20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민방위 경보시스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운영

제24조제20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사항 총괄(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략사업과에서 담당한다.)

21. 도시·농촌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7호를 제2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제31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농촌마을 리더 및 체험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20. 녹색농촌 휴양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제21호, 제23호 및 제2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6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8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1호를 제2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4호를 제31호로 한다.

제31조제25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7호를 제2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0호를 제2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3호를 제30호로 한다.

제31조제32호를 제29호로 한다.

제32조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한다.

제39조제29호부터 제35호까지를 각각 제30호부터 제3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온라인(고맏나루)장터 농산물 입점자 선정 및 상품관리, 상품관련 입점업체 교육에 관한 사항

제4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공주시립합창단 운영

제4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 (제47조 관련)

읍·면·동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이인면사무소	이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탄천면사무소	탄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계룡면사무소	계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반포면사무소	반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의당면사무소	의당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정안면사무소	정안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지사무관
우성면사무소	우성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사곡면사무소	사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평면사무소	신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중학동주민센터	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웅진동주민센터	웅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금학동주민센터	금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옥룡동주민센터	옥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신관동주민센터	신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월송동주민센터	월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2]

부읍·면장의 직급 (제48조 관련)

읍·면별	직 위	직 급
유구읍사무소	유구읍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인면사무소	이인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탄천면사무소	탄천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보건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계룡면사무소	계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반포면사무소	반포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의당면사무소	의당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정안면사무소	정안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복지주사
우성면사무소	우성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사곡면사무소	사곡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보건주사
신평면사무소	신평면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별표3)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총 계	998(1)	548(1)	17	157	50	226	20	132	74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960(1)	540(1)	17	127	50	226	20	132	74
3급 소계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소계	5	3	1	1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	3	1						
5급 소계	52	26	2	5	3	16	1	9	6
지방행정사무관	7	7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6	12	2		2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사서·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									
지방행정·농업·보건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8					8	1	7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48	152	3	38	12	43	4	27	12
지방행정주사	74	53	2		4	15	1	9	5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지방녹지주사	3	3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시설주사	12	12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진료주사	14			14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6	5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6	4			2	10	1	6	3
지방행정·전산주사	2	2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6	5			1				
지방행정·농업주사	12	3		4		5		2	3
지방행정·녹지주사	4	4							
지방행정·보건주사	4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지방행정·시설주사	28	26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간호주사	4			4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4	2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4	1				3		3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2	2							
지방행정·농업·녹지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1	3			1	7	1	6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지방농업·녹지·시설주사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지방운전주사	2	2							
지방위생주사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지방기계운영주사									
7급 소계	282	177	4	28	12	61	5	34	22
지방행정주사보	71	52	2	1	3	13	2	3	8
지방세무주사보	7	7							
지방전산주사보	2	2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9	7				12		6	6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사서주사보	4				4				
지방공업주사보	6	5		1					
지방농업주사보	3			3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2			2					
지방보건진료주사보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26	26							
지방방송통신주사보	3	2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6	6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3	4				9	1	5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4	6				8	1	6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7	5			2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6	1		2		13		11	2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2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22	17	1			4	1	2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보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지방농업·수의주사보	3	1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3	3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3	2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지방운전주사보	5	5							
지방위생주사보	2				1	1			1
지방시설관리주사보	1	1							
지방통신운영주사보	1				1				
지방전기운영주사보	2	2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기계운영주사보	2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8급 소계	226	116	3	41	8	58	4	37	17
지방행정서기	46	25	3			18	2	9	7
지방전산서기	1	1							
지방세무서기	10	9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10	4				6		6	
지방사서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6	2		3	1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4			4					
지방보건진료서기	3			3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지방환경서기	2	2							
지방시설서기	19	10			1	8		8	
지방행정·전산서기	3	2			1				
지방행정·세무서기	9					9	1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2	9				3		2	1
지방행정·사서서기	1				1				
지방행정·공업서기	7	7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1		5	1	2	2
지방행정·녹지서기	2	2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3	
지방행정·환경서기	3	3							
지방행정·시설서기	18	15				3		1	2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지방공업·농업서기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2			2					
지방보건·간호서기	7			7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2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운전서기	8	8							
지방위생서기	6	1		1	2	2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전기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3	2			1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지방사무운영서기	1	1							
9급 소계	146(1)	65(1)	4	14	15	48	6	25	17
지방행정서기보	27(1)	9(1)		1	1	16	2	10	4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1	3				8	2	2	4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농업서기보	2			1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2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1				3		2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7	1				6		1	5
지방행정·공업서기보	2				2				
지방행정·농업서기보	6			1		5		5	
지방행정·녹지서기보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2	2							
지방행정·시설서기보	6	5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서기보	1			1					
지방속기서기보	2		2						
지방운전서기보	25	19	2	2	2				
지방위생서기보	8	2		1		5		2	3
지방시설관리서기보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지방통신운영서기보									
지방전기운영서기보	1				1				
지방기계운영서기보	3	1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15	10		1	4				
연구직 계	5	5							
지방학예연구사	3	3							
지방기록연구사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기록연구사·행정주사보	1	1							
지도직 계	30			30					
지도관 소계	3			3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	1			1					
지도사 소계	27			27					
지방농촌지도사	23			23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별정직 계	2	2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별표 4]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2항 관련)

(단위: 명)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면 동	직무분야
총 계	11	6	2	2	1		
일반직 소계	11	6	2	2	1		
5급 소계	2	1		1			
지방행정사무관	1	1					기업유치1
지방의무사무관	1			1			의료분야 1
6급 소계	1	1					
지방행정주사	1	1					시정홍보 1
7급 소계	5	3		1	1		
지방행정주사보	4	2		1	1		시정홍보 1 축제 1 유통지원 1 공연기획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	1					공공디자인 1
8급 소계	1	1					
지방행정서기	1	1					외국어 통역 1
9급 소계	2		2				
지방속기서기보	2		2				속기사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획담당관) ① (생략)</p> <p>② 기획담당관의 설치목적은 시 미래비전 설정과 시정 종합 기획,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 등에 있고,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u>5.</u> (생략)</p> <p><u>6.</u> ~ <u>23.</u> (생략)</p>	<p>제5조(기획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국가 및 지방 균형발전 사업 총괄</u></p> <p><u>6.</u> (현행 제5호와 같음)</p> <p><u>7.</u> ~ <u>24.</u> (현행 제6호부터 제23호까지와 같음)</p>
<p>제8조(미디어담당관) ① (생략)</p> <p>② 미디어담당관의 설치 목적은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지역 정보화 지원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p> <p>1. ~ 5. (생략)</p>	<p>제8조(미디어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6.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농촌체험
및 3농혁신 사업 개발 및 추진

7. 온라인(고맛나루)장터 관리 운
영에 관한 사항

8. 온라인(고맛나루)장터 입점자
및 제품관리, 유통관리, 고객관리
에 관한 사항

9. (생 략)

10. 온라인 공주 시민제도 확충, 가
맹업소관리, 여행코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1. ~ 23. (생 략)

24.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운영

25. (생 략)

26. (생 략)

제16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의
설치 목적은 관광 기반시설 확충
과 다양한 축제 운영으로 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 외 관
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며,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을 위한

6. 온라인(고맛나루)장터 관리 운
영에 관한 사항 총괄

7. 온라인(고맛나루)장터 판매, 홍
보, 유통, 고객관리, 정산, 회계
관리, 시스템 운영관련 입점업체
교육

<삭 제>

8. (현행 제9호와 같음)

<삭 제>

9. 온라인 공주 시민제도 확충, 가
맹업소관리, 여행코스 관리, 여름
캠프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10. ~ 22. (현행 제11호부터 제23
호까지와 같음)

<삭 제>

23. (현행 제25호와 같음)

24. (현행 제26호와 같음)

제16조(문화관광과) -----

예술진흥정책 수립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18. 공주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19. ~ 34. (생략)

제18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의 설치 목적은 학교 교육 지원 및 시민 평생교육을 통해 품격 높은 교육문화를 형성하고, 아울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밝고 명랑한 시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20.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

21. (생략)

제20조(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의 설치 목적은 재난·재해 대응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조성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22.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

1. ~ 17. (현행과 같음)

<삭제>

18. ~ 33. (현행 제19호부터 제34호까지와 같음)

제18조(교육체육과) -----

-----.

1. ~ 19. (현행과 같음)

<삭제>

20. (현행 제21호와 같음)

제20조(안전관리과) -----

-----.

1. ~ 21. (현행과 같음)

22. 민방위 경보시스템, 민방위 시

육성 및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21. 녹색농촌 휴양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어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여름캠프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22. (생략)

23. 지역별 마을별 특화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24. (생략)

25. ~ 28. (생략)

29. 평생분담마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0. · 31. (생략)

32. ~ 34. (생략)

제32조(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의 설치 목적은 사곡면 계실리 지구(이하 “복합연수단지”라 한다.) 국가 · 공공기관 및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이하 “도기관”이라 한다.)의 이전 지원과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활성화 및 도

체험마을, 농어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삭제>

21. (현행 제22호와 같음)

<삭제>

22. (현행 제24호와 같음)

23. ~ 26. (현행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삭제>

27. · 28. (현행 제30호 및 제31호와 같음)

29. ~ 31. (현행 제32호부터 제34호까지와 같음)

제32조(전략사업과) -----

자공예 문화자원 육성을 통해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명품 관광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13. (생략)
- 14. 도시 빈집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15. ~ 28. (생략)

제39조(농정과) 농정과의 설치 목적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28. (생략)
- <신설>

- 29. (생략)
- 30. ~ 35. (생략)

제44조(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의 설치 목적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

-----.

- 1. ~ 13. (현행과 같음)
- <삭제>

- 14. ~ 27. (현행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제39조(농정과) -----

-----.

- 1. ~ 28. (현행과 같음)
- 29. 온라인(고맛나루)장터 농산물 입점자 선정 및 상품관리, 상품 관련 입점업체 교육에 관한 사항

- 30. (현행 제29호와 같음)
- 31. ~ 36. (현행 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와 같음)

제44조(문화시설사업소) -----

양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체육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소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및 연정국악원 운영

3. ~ 13. (생략)

제45조(복지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의 설치 목적은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시민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선진 장사시설 나래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있으며, 소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공주시립합창단 운영

3. ~ 13. (현행과 같음)

제45조(복지시설사업소) -----

-----.

1. ~ 4. (현행과 같음)

5.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6. (현행 제5호와 같음)